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

1. 설치

가. 옆면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옆면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900밀리미터 이하 또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길이 방향

- 1) 1개 이상의 옆면반사기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에 1개를 설치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하에 1개를 설치할 것
- 2) 인접하는 2개의 옆면반사기 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인접하는 2개의 옆면반사기 간 거리는 4,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 4) 옆면반사기는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앞측 45도·뒷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수직각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옆면반사기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사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기준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자동차 옆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